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93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신○○, 임○○
피 고	○○특별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7. 26.

주 문

1. 피고가 202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0,796,480원, 지방교육세 4,353,980원, 농어촌특별세 3,414,890원, 가산세 20,619,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9. 신인 미술작가 발굴, 지원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9. 3. 26. 원고 대표자 이사 B으로부터 ○○ ○○구 C 외 2필지 64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85%)받고 나머지 최소납부세액(15%)의 취득세 등 합계 9,732,4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50,796,480원, 지방교육세 4,353,980원, 농어촌특별세 3,414,890원, 가산세 20,619,130원의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은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2019. 12. 31.까지 면제하면서, 같은 법 제178조 제1호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단체가 영리단체인지 아니면 비영리단체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단체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0311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과 D은 2002. 11.경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2003. 2. 15. 주택건축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인접 토지 민원인 E(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의 민원으로 인해 피고가 2003. 12. 12. B과 D에게 건축공사의 중지를 지시하였다.

② B과 D은 민원인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민원인과의 협의를 위한 만남도 용이하지 않아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경과하다가 2018. 6. 11. 단독주택 신축 건축허가를 문화시설(전시실) 및 단독주택으로 건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고 2019. 6. 11. 이 사건 토지의 증여로 건축주 B을 원고로 변경하였다.

③ 피고는 2020.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허가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기존 건축공사 시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인접지 민원인의 피해 및 고충사항이 있었던 점을 감하하여 '공사재개 전 민원인과의 긴밀한 사전협의 및 합의를 통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 및 인접지 안전 조치계획 등을 수립, 담장 재설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민원 해소'를 확인 후 공사 진행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④ 민원인이 2020. 2. 26. 이 사건 변경허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재결을 받았고, 이 법원 2020구합82901호로 이 사건 변경허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1. 18. 기각판결을 받았으나, 민원인이 서울고등법원 2022누34724호로 항소하여 2024. 1. 25.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변경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4두34610호로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상고 기각되었다(이하 위 소송 절차를 '관련 소송 절차'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 변경허가의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하고, 2019. 10. 4.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초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② 원고는 민원인의 민원 해결을 위해 피고에게 민원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민원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변경허가에 따른 건축주를 변경한 이후에도 민원인의 단순한 민원을 넘어선 관련 소송 절차 등의 발생 등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와 D은 관련 소송 절차에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나 이 사건 변경허가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국 취소되었고, 그 때문에 원고로서는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건물 신축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기존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추진한 이 사건 토지 문화시설 신축 등의 사업은 민원인의 민원 등에 의한 피고의 공사 진행 협조요청 공문의 내용과 같이 공사 진행이 쉽지 않고, 관련 소송 절차 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이 상당 시간 지속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 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끝.